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와 지방세 채권확보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I. 의의

(1) 개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거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개인채무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와 그에 따라 공매 등을 진행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회사정리법과 유사한 제도로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공익채권에 대하여 수시로 지방세 채권을 변제 받을 수가 있으나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정리채권은 회사 정리인가안에 따라 변제되며 이를 제2차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권되어버리며 비채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서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과 같이 수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계획에 의거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변제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채무회생제도와 파산절차 및 워크아웃제도와 비교

개인채무회생제도와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비교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나,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되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일정기간동안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사회적·법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II.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리

(가)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제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변제에 사용	- 파산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 파산선고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 5년 변제기간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시 모두변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나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개인회생채권의 범위에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된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서 후순위 개인채

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별금·과료·형사소송 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나)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 2. 개인회생절차진행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그리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압류금지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과 유사하며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되,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면제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면제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수시로 면제되는 것이 차이점이며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 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면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면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면제하여야 한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채권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세
 -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라. 가록 내지 다록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후 개시 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시결정의 효과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인회생채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나 개인회생채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는다.

(마)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회사정리법에서는 제2차관 개인집회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실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이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 지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변제계획인가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하며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이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된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차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며,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

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따라서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기나,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나,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 적격자의 범위

개인채무자신청자 적격의 범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개인채무자회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므로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회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므로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3) 면책의 효력 범위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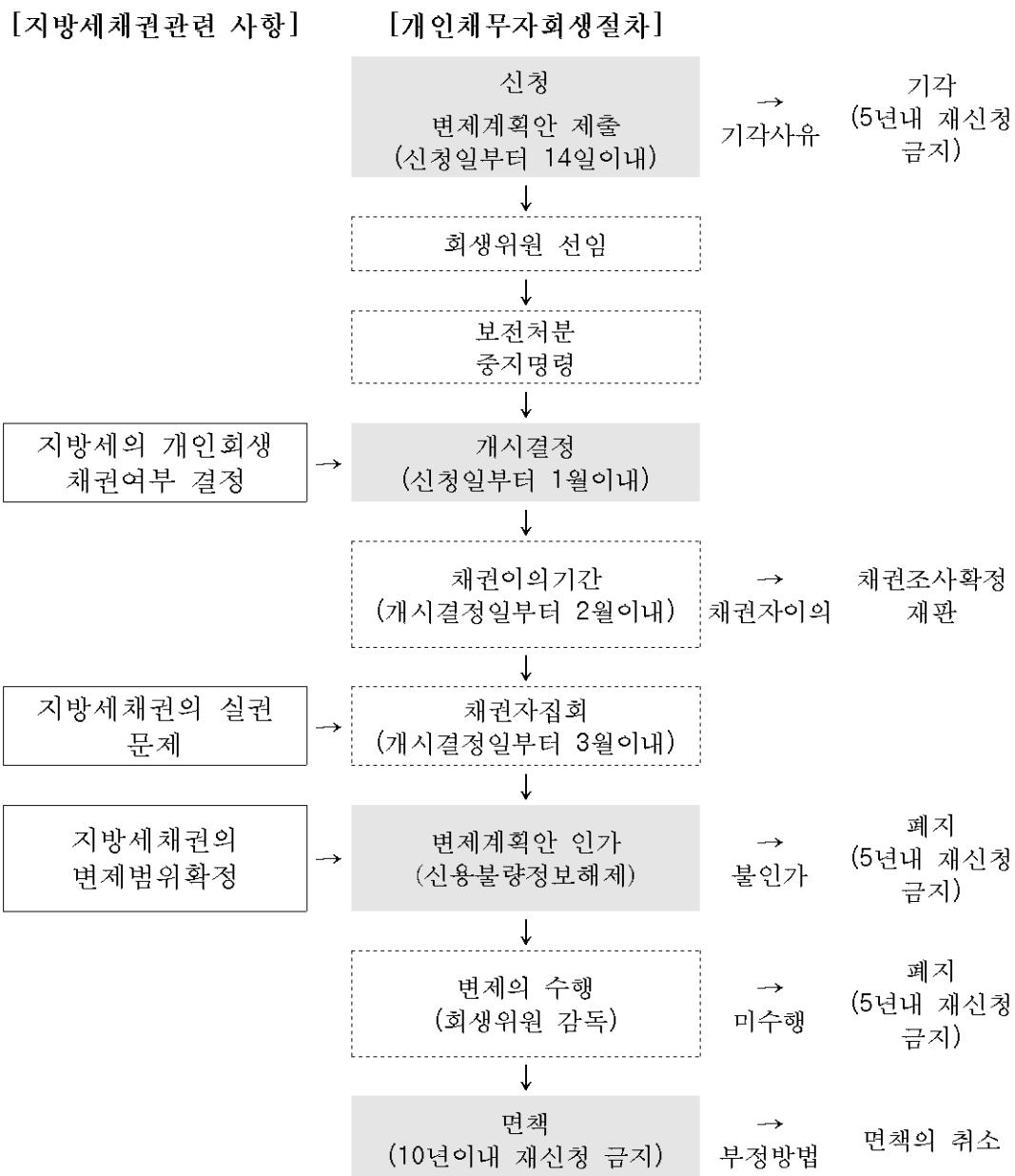
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와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비록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의거 면제계획인가결정이 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시로 면제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면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되는 바,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

(4) 개인채무자회생제도절차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가) 절차



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고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며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된다.

(나)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절차에 의거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② 재산목록 1통
-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⑥ 진술서 1통
- ⑦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⑧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⑨ 변제계획안 1통
- ⑩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른 필요한 서면

(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 인지를 첨부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기본 송달료 27,000원 + (5×3×2,760원) = 총 68,400원> 임

(5) 변제계획안의 주요내용

(가) 개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나,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며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8년이다.

(나) 절차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나,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

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들 필요가 있다.

(다) 변제기간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

년으로 한다.

⑥ 채무자는 위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① 내지 ⑤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차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차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된다.

(라) 개인회생채무자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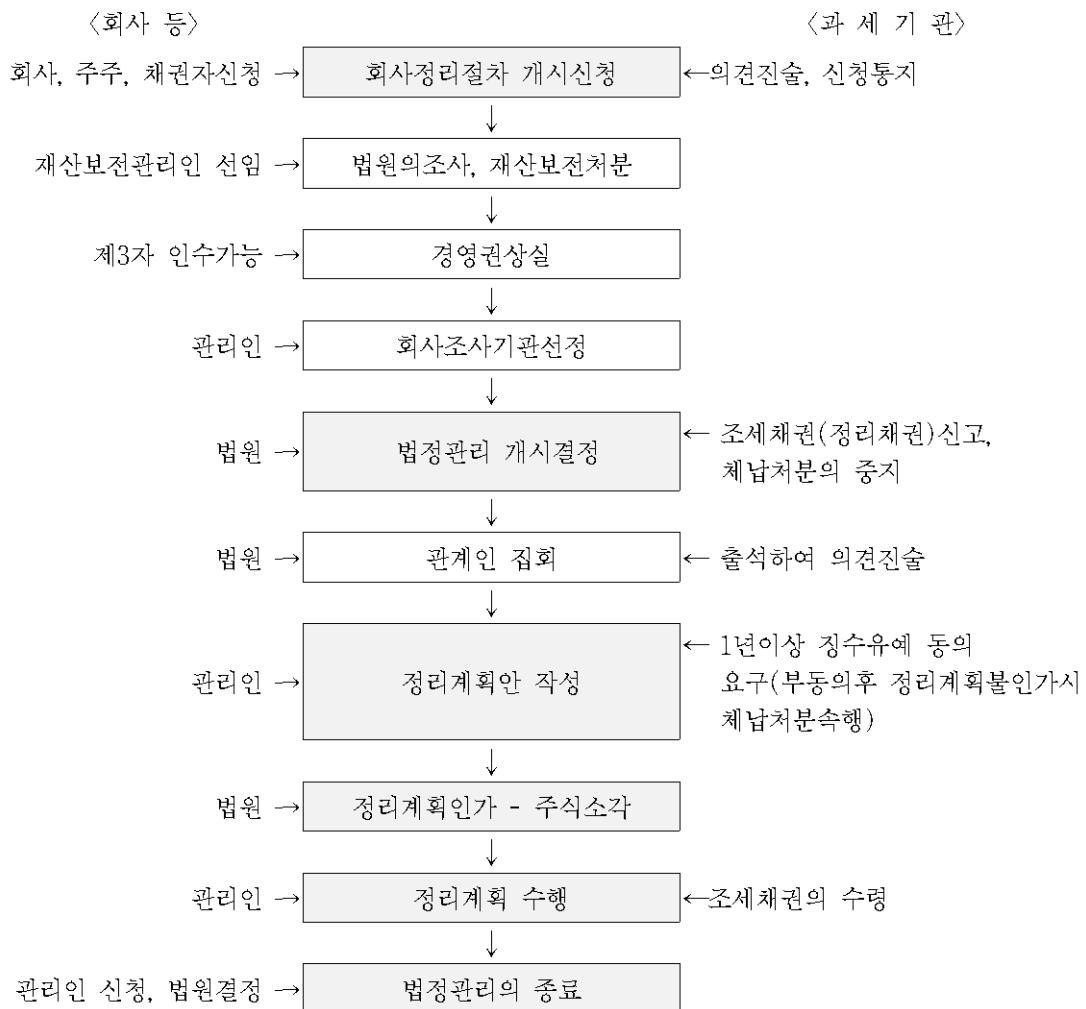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 · 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한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원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며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I. 개인채무회생제도와 회사정리절차제도와 비교

(1)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2)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와의 관계

- (가) 정리채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세채권의 특례
일반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하나, 지방세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에 회사정리신청이 있음을 통지받게 되는 것이다. 정리절차개시 결정에 의하여 권리의 개별적 행사 및 체납처분도 금지되나 그 기간(1년간)이 한정되고 그 이상

연장(6월간) 할 경우에는 징수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 (별금, 조세등의 신고) ①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자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청구권에 준용한다.

정리채권은 신고를 요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권이 되지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신고시기의 특례가 있다. 즉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정리

계획에서 원칙적으로 징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가의 유예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 소득세 할 주민세 등의 일부는 공익채권으로 취급 한다. 이 경우 공익채권의 변제문제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금 등도 후순위 채권으로 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으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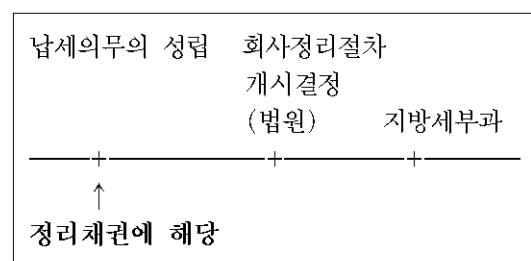
(나) 지방세 채권과 정리채권의 범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하며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한다. 양 채권의 커다란 차이는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여 야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다.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당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지방세 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느냐 여부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일』과 지방세 채권의 『성립일』을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이전에 성

립된 경우에는 정리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정리절차개시일전에 과세 요건을 성립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일이 후에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면 경정 또는 결정이 그 이후에 되더라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 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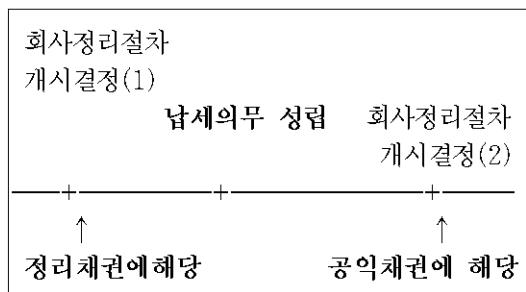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자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대판 93누14417 94. 3. 25)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신청의 인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되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된 경우로서 추후에 세무서장이 경정 또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년도의 종료일에 법인세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성립하게 됨으로 공익채권이 되지만,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성립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익채권은 정리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이를 징수하고 보관하는 것이므로 환취권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취권은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배권으로부터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바, 재단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파산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의 재단에 포함된 것을 배척하는 것을 이해 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의 환취권이라고 한다.



(다) 정리채권의 신고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 기한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비록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리계획이 인가되면 종국적으로 실권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실권된 권리가 부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아니한다.(대판 98다20202 98. 8. 21참조) 그러나 공익채권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신고하여야 할 지방세의 채권은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에 관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실권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채권의 조사절차가 필요 없이 법원이 정리채권자표나 정리담보권자표에 직접 기재함으로서 동시에 확정되며 조세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회사정리법 제 158조 ①관리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소송 기타의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라) 정리채권의 신고기간과 방법

정리채권의 신고는 회사정리법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개시결정한 날로부터 2주이상 2개월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과세권자는 지방세 채권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당해 회사에 하거나 관리인에게 신고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완신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 보호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마) 신고의 추완

정리채권자(과세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축하거나 단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불변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완신고기간도 시기는 정리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에 1월 이내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나 종기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조세채권의 추완 여부판단

[1] 회사정리법 제8조는 정리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3] 회사정리법 제127조와 제138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둘째로,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각 1개월 내에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정리채권자·주주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일반조사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의 요건을 심리한 다음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정리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추완신고된 후 개최된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이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조사기일 이전에 신고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조사기일에서 조사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추완신고의 하자는 치유되어 그 정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일반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등이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대판99마

2081 99. 7. 26)

(마)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범위

지방세 과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범위에 법원으로부터 신고통보를 받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사후에 정리채권자(과세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언제까지 신고의 추환이 가능한 것인가?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리채권자인 과세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실권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계인 집회가 있기 전까지는 신고추환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바) 정리채권 미신고시의 효력

공공성을 가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고 정리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의 면책』이 되는 것은 채권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체는 존속하되 정리절차 종료후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즉,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自然債務』가 된다는 의미이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면제를 하면 유효

한 면제가 되지만 채무자가 면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강제집행소송을 구할 수가 없는 채무로서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한다.(예: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완성이후의 채무, 파산법 등에 의거 일부면제를 받는 부분의 채무). 또한 자연채무에 대한 면제는 非債辨濟로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에도 착오, 도덕 등의 원인으로 채무가 있다고 면제하는 경우에 비채면제라고 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납세자(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으로 과세권자는 정리절차에 관계없이 체납처분등이 가능한 것이다.

[사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한 행사여부판단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없음(재경원 기법 46019- 308 96 10. 10)

(3) 지방세의 우선원칙의 적용 및 배당문제 판단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

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정리법 제210조의 규정에서는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있어서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단,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 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 채권의 우선과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의 배당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지방세법상에서 지방세 채권 우선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리채권의 연장선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기본통칙31-4 제1호의 규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10조(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또는 파산법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판례] 배당이의와 조세채권의 효력

[1]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 등기 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 등기 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유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 진행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 까지 압류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 당해 압류 등기 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강제집행 진행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 까지 압류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

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대판 96다51585 97. 2. 14)

[판례] 지방세 우선의 시기 판단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8다54298 99. 1. 26)

[판례] 취득세 가산세와 근저당권의 우선 판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대판 95다51113 96. 3. 8)

[판례] 당해세 우선효력의 판단

96. 1. 시행된 지방세법 제31조는 해당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등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당해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는 바, 당해세 우선징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시행이후에 부과된 당해세는 위 개정 법률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위 지

방세법상의 당해세 우선징수규정은 96. 1. 1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원심판결이 있으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개정법률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대판 98다60880 99. 4. 9)

[판례] 지방세우선의 시기판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 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대판 98다59125 99. 3. 12)

[현재] 당해세의 범위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 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憲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

3.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財產)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地方稅)”라는 부분은 그 안에 당해 재산(財產)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講學上)의 수득세(收得稅), 소비세(消費稅) 및 유통세(流通稅)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와 재산권보장(財產權保障)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나, 이를 당해 재산(財產)의 소유(所有) 그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講學上)의 재산세(財產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憲法違反)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3. 담보권(擔保權) 설정시기(設定時期)
 나 지방세(地方稅) 납부기한(納付期限)과
 관계없이 담보권(擔保權)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 “당해 재산(財產)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 이란 당해 재산으로 인하여 부과된 지방세 및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은 지방세(地方稅)의 확보라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담보권자(擔保權者)의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는 법률이고,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측면이 월등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현재91 현가1 94.8.31)

(4) 정리절차와 징수유예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증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43조 제2항의 규정에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증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징수유예의 절차와는 별도로 처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징수유예에 관한 동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여부를 결정시에 조세채권의 적정한 확보와 회사의 갱생목적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지방세의 과세방법 (가산금, 가산세)

지방세의 가산금은 지방세 부과고지세목의 납기내에 그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바,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일 이후에는 정리계획에 의거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으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 성립한 가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관례]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개정 규정(1983. 12. 19. 법률 제3661호)의 시행 전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에 당연히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16조)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하

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90누2833 91. 3. 12.)

(6) 결손처분의 사유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7) 체납처분의 속행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방세 채권(정리채권)을 이행기일에 이행하여야 하는 데 정리계획 이행기일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되는바,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이행기일이 경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회사정리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정리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②정리절차폐지나 정리절차의 종결시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가 있으며 법원의 보전처분중이라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중지명령이 없는 한 과세권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전처분은 정리회사에 대한 행위(재산보전, 채무변제, 등)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8) 시효진행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가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그 자체로서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정리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정리절차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는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

으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거 정리계획에서 신회사가 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IV.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와 지방세 체납정리와의 관계

(1) 개인채무자회생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개인이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거 채무를 면제 받을 수가 있는바, 그 채무에는 지방세 채무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때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개인이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그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곤란해지고 나아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면제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면제계획에 의해서만 면제가 허용된다.

(2) 개인채무자회생신청자의 지방 세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경우이므로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비록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채무를 면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에는 과세(납세)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납사실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만 세목별증명서 비고난에 체납사실을 표기하면 되는 것이다.

(3) 자동차 이전등록 문제

지방세법 제196조의1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

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를 미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지역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납세증명서 등 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징수유예와 증가산금 부과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한 개인에 대하여 징수유예 등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한 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징수유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요건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라도 단지 지방세 채무를 면제계획에 의거 면제할 수가 있는 것이며 징수유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가산금이나 증가산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채무자회생개시 결정을 하여 면제계획이 인가되고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그 개인채권자목록 범위내에서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된 본세와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그 범위내에서만 면제되는 것이다.

(5) 결손처분의 처리

지방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록 납세의무가 면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개인채무자회생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면책결정이 된 때에는 지방세 채권도 면책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관례] 결손처분의 입증책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규정과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13308 판결)

(6)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금액이상인 자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록 개인이 개인채무자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납하여 결손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7) 등록세의 비과세적용

개인채무자회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자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와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자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 상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용문제가 발생된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8)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지방교육세의 포함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에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교육세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에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다. 교육세는 국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인 만큼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9) 주택임대차보증금과 지방세채권의 우선변제문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제2항의 규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도 지방세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와 체납처분

개인채무자회생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인채무자회생개시결정이후 개인채무자회생절차중인 납세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 등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며 변제계획에 따라서 지방세를 변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개인채무자회생개시 결정이전에 한 압류를 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정리채권에 해당여부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 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계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구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